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4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5 . 9

제출자 : 김진석의원외6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 
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 
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나. 심사기간은 2000. 5. 15.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, 평창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(발의)된 조례안을  
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 
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 음

# 심 사 제 획

##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
-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00년 5월 15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

- 이정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 
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